

광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가단5274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1. 11.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21. 11. 11. 접수 제109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C는 위 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출과목	약정체결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채권자
기업일반자금대출	2015. 8. 20.	2016. 8. 19.	18,000,000원	E은행

2) 소외 회사가 2022. 3. 23. 위 대출금의 이자 연체로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22. 6.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83,245,27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256,43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82,988,846원이다.

3) 원고는 가압류 비용 등으로 대지급금 2,876,290원을 지급하였고, 2022. 5. 27. 25,734원, 2022. 6. 2. 25,704원을 각 회수하여 대지급금 잔액은 2,824,852원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C는 2021. 11. 9.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1. 11.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접수 제109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채무자 C의 무자력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85,813,698원(대위변제금 182,988,846원 +
대지급금 2,824,852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위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일인 2022. 6. 21.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은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후 원고가 E은행에 소외 회사와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그로 인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C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확보하려는 방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당시 원고의 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원고의 채권이 장래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 또한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와 2017. 3.경부터 계속적인 물품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11. 9.에 이르러서야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까지 물품대금 잔액은 287,050,750원이었던 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소외 회사의 재산이 아닌 C 개인 명의의 재산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채무자인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곡성군
전 2450㎡

2. 전라남도 곡성군
전 97㎡

- 이 상 -